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1161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7,216,569원 및 그 중 11,691,089원에 대하여는 2022.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825,666원에 대하여는 2022.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3분의 2에 관하여 2021. 10.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3분의 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 13분의 2에 관하여 2021. 10.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331,97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4,331,9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① 2019. 7. 31. 8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20.9%,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연 3%'로 하여, ② 2019. 10. 1. 45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20.9%,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연 3%'로 하여, ③ 2018. 9. 21. 500만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20.9%,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연 3%'로 하여 각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0. 10. 17.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2022. 2. 22.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좌번호	대출과목	원금잔액	비용잔액	인수전 이자잔액	인수후 이자잔액	합 계
	E	7,403,696	0	0	787,625	8,191,521
	E	4,287,393	0	0	456,219	4,743,612
	E	3,825,666	0	0	455,770	4,281,436
	합 계	15,516,755	0	0	1,699,614	17,216,569

3)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무 원리금 합계 17,216,569원 및 위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대출의 남은 원금 합계 11,691,089원(= ① 7,403,696원 + 4,287,393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2.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제3 대출의 남은 원금 3,825,666원에 대하여는 위 2022.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F는 2021. 10. 16.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B 및 G, H, I, J가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21.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피고 C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2021. 10. 29. 접수 제5538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10. 29. 접수 제553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2/13)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였다.

3)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제3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4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K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인 2021. 12.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4)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가액은 11,895,000원,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가액은 36,557,820원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무자인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 C의 악의는 추인되므로, 피고 B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6)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지분 13분의 2에 관하여는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 13분의 2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 K조합의 근저당권이 말소됨에 따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일부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전채권액으로 주장하는 2022. 2. 22.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채무 원리금 합계 17,216,569원에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각 지분 13분의 2의 가액 1,830,000원(= 11,895,000원 × 2/13)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이 15,386,569원(= 17,216,569원 -

1,830,000원)으로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지분 13분의 2의 공동담보가액 4,331,972원[
(36,557,820원 - 8,400,000원) × 2/13,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지분
13분의 2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공동담보가액인 4,331,97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331,9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판사 임윤한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상북도 영양군 전 374㎡
2. 경상북도 영양군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영양군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층 41.98㎡
부속건물 1층 목조스레트 건조실 18.45㎡
3. 경상북도 영양군 답 1838㎡ 꺾.

